

## 신탁계약서 변경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, 가입조건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<u>최초 가입 시 계좌별로 100만원(선취판매수수료 포함) 이상을 납입한 투자자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.</u></p> <p>④ ~ ⑤ (생략)</p>	<p>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, 가입조건 및 명칭 등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③ ~ ④ (현행과 같음) (<u>호번 변경</u>)</p>
<p>제22조의 2 (미국 국적의 비거주자에 대한 판매)</p> <p>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서 미국 국적인 자에게 이 수익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.</p>	<p><u>&lt;삭제&gt;</u>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u>부칙</u></p> <p><u>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